

한국건축정책학회 윤리규정

2014년 00월 00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회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한국건축정책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간행물(이하“학술지”라 한다)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건축정책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조 (용어 정의)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나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건축정책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에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구성)

1. 위원회는 논문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를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논문이사(논문집편집위원장)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회의 통상관례를 따르되,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학회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10조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11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치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3조 (기피, 제척, 회피)

1. 특정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4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조 (판정)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4장> 후속 조치

제 16조 (후속 조치)

1.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을 공지.
 - (3)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4)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5) 기타 적절한 조치.
2.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 1항 제 4호의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기간은 부정행위 과중(過重)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4. 학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17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18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 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9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1조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1. 학회 신입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2조 (행정 및 예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장> 연구자 윤리규정

제 2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도면, 도표, 사진 등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4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 2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26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장> 논문편집위원(회) 윤리규정

제 27조 (논문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 28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9조 (비밀엄수)

편집위원(회)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7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 30조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 31조 (심사위원의 사퇴)

심사위원은 저자나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사퇴 의사를 통보한다.

제 32조 (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33조 (저자에 대한 배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34조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